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폐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의 신설을 통해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폐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작은도

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구민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함.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시행.'22.12.8.)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반영한 것임.
- 안 제6조제3항(지원)에서 재정지원 절차·방법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표를 별표로 첨부함.
- 안 제16조(실태조사)에서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비를 차등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19.4.11.)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은 20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25개소로 총 45개소('24.8.1.기준)임.
-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정의 세분화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 추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세부적으로 구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전부개정.'21.12.7.)된 것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임.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

을 별표(영등포문화재단 위탁 작은도서관 2개소는 제외)로 추가하여 정보전달의 편의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지연、유승용、이규선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가.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일시에 폐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의 신설을 통해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폐쇄 시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라.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구민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2. ~ 8. 16.):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을 “자를”로 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3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6조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제7조의3 관련)

연 번	명 칭	위 치
1	영등포본동 작은도서관	신길로61길 17 영등포본동주민센터 3층
2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영등포로64길 15 청소년문화의집 1층
3	영등포동 작은도서관	국회대로44길 4 자치회관 1층
4	여의동 작은도서관	국제금융로 124 여의동주민센터 3층
5	당산1동 작은도서관	양산로23길 11 당산1동주민센터 2층
6	당산2동 작은도서관	당산로41가길 7 당산2동주민센터 3층
7	늘샘드리 작은도서관	도영로7길 10 도림동주민센터 4층
8	목화마을 작은도서관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218호
9	양평1동 작은도서관	선유서로34길 10 주민복지회관 4층
10	양평2동 작은도서관	선유로 47길 30 양평2동주민센터 4층
11	신길1동 작은도서관	영등포로84길 24-5 신길복지관 2층
12	신길3동(생각나무) 작은도서관	신길로41라길 13-8 신길3동주민센터 2층
13	신길4동(드나드리) 작은도서관	신길로42길 1 신길4동주민센터 2층
14	신길5동(꿈터) 작은도서관	도림로 264 신길5동주민센터 3층
15	신길6동(책공간) 작은도서관	대방천로 167 신길6동주민센터 2층
16	신길7동(마음서랍) 작은도서관	여의대방로43길 10 신길7동주민센터 5층
17	대림1동 작은도서관	디지털로 441 자치회관 3층
18	대림2동 작은도서관	대림로23길 27 4층
19	밤동산 작은도서관	여의대방로61길 18-2
20	조롱박 작은도서관	대림로8길 1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
<신 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신 설>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 자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①·② (생 략)	제6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3(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1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6조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